



군산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GunSan Social Economy Center



☎ 군산시 중정길 8-1
☎ 063. 443. 5437
🌐 gunsansec.or.kr
✉ gsec20205@gmail.com

전라북도 지원기관
(사)전북사회적경제연대회의 063.214.9351 / 063.214.9354
중앙 지원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www.socialenterprise.or.kr

예비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 지원제도

지원제도	지원내용	지원대상	
		예비	인증
재정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기업이 전략기획, 회계, 마케팅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 고용 시 인건비 지원 • 지원금은 200만원~250만원 한도로 일부 수혜기관 자부담 • 자부담률 : 예비사회적기업 10%(1차년도)→20%(2차년도) • 인증사회적기업 20%(1차년도)→30%(2차년도)→50%(3차년도) • 지원인원 : 예비사회적기업 1명 • 인증사회적기업 2명(50인 이상 사회적기업은 3명) • 고행자 전문인력 채용 시 1명 추가 지원 • 지원기간 : 예비사회적기업 2년, 인증사회적기업 3년 	0	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비)사회적기업이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참여 시 참여자 인건비 지원 • 당해년도 최저임금 기준 지원금 지급(사업주 부담분 사회보험료 포함) • <2018년 이전 인-지정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 1년차 70%, 2년차 60% - 사회적기업 : 1년차 60%, 2년차 50%, 3년차 30% * 취약계층 20% 추가지원 • <2019년 이후 인-지정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 1~2년차 각 50% - 사회적기업 : 1~3년차 각 40% * 취약계층 20% 추가지원 • 지원인원 : 최대 50인 • 지원기간 : 예비사회적기업 2년, 인증사회적기업 3년 	0	0
사업개발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기업의 기술개발, R&D, 홍보 및 마케팅 등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비 지원 • 지원한도 : 연간 1억원(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5천만원), 최대 3억원 • 자부담 : 지원회차에 따라 총사업비의 일정비율 이상을 자부담 	0	0
사회보험료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주 부담 4대 사회보험료 일부 지원(4년간) • 지원인원 : 최대 50인 한도 	-	0
경영지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기업의 성장단계에 따라 지원주제, 내용, 컨설팅기관 매칭방식 등을 다양화하여 맞춤형 지원 • 지원한도 : 총 5회(연간 1회), 예비사회적기업은 연 1천만원 이내 - 표준형 : 3~10백만원 - 자율형(자주성장형/공동형) : 지원금액 제한 없음 * 기존 기초컨설팅은 기초경영지원사업으로 개편·분리 • 자부담 : 신청(계약)금액에 따라 금액 구간별 10~40% 	0	0
공공기관 우선구매 권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생산품이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권고 * 대상(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 국가기관,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847개소(2020년) 	-	0
시설비 등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기업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부지 구입비·시설비 등을 지원·융자하거나 국·공유지 임대 등 지원 * 미소금융, 중소기업 정책자금, 희망드림론 협약보증, 사회적기업 상사특별보증, 사회적기업 정책성 특례보증 	△ (미소 금융은 예비도 포함)	0
세제지원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기업에 법인세·소득세 3년간 100%, 그후 2년 50% 감면 • 취득세·등록면허세 50% 감면, 재산세 25% 감면 • 개인지방소득세 3년간 100%, 그후 2년간 50% 감면 • 사회적기업이 제공하는 의료보건 및 교육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	0
모태펀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노동부 모태펀드 출자 및 민간출자자 참여를 통해 사회적기업투자조합 결성 및 (예비)사회적기업 등에 투자(5개 조합, 290억원 규모) * 2020년도 제6호 투자조합 결성 	0	0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절차

예비사회적기업 신청 : 전라북도 및 정부부처 개별 공고
군산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홈페이지 참고(www.gunsansec.or.kr)



-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사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법인·단체 등을 설립하여야 함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신청하려는 기관은 신청 전에 지원기관의 사전 상담 및 컨설팅을 받을 수 있음

사회적기업 인증절차



- * 지원기관 : (사)전북사회적경제연대회의
- * 진흥원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기업은 상기 예비사회적기업의 요건 외에도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 기업을 설립하고 영업활동을 하면 인증 신청을 할 수 있으나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이 같은 기간 지출된 노무비의 50% 이상이 되어야 함
-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를 갖추어야 함
- 사회적기업 인증을 신청하려는 기관은 신청 전에 지원기관의 사전 상담 및 컨설팅을 받을 수 있음



사회적 가치 실현으로
같이사는 세상을 만드는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 이란?

사회적 목적을 우선으로 추구하면서
재화·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

취약계층에게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우리 사회에 부족한 사회서비스를 확충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 가치 실현을 추구하는 기업가를 발굴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장(지역형)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부처형)이 지정한 기업

사회적기업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에 따라 인증한 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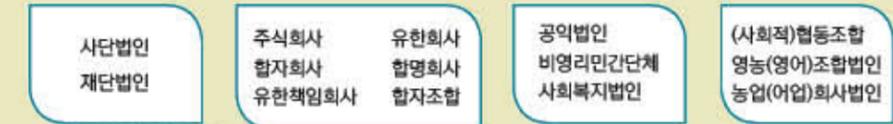


예비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 인·지정 요건

구분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요건	① 조직형태	① 조직형태
	②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②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일자리제공형은 1명 이상 고용 필요)
	③ 사회적 목적 실현(취약계층 고용·사회 서비스제공 등)	③ 사회적 목적 실현 실적 또는 사업계획서 확인 (취약계층 고용·사회 서비스 제공 등)
	④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④⑤ 해당사항 없음
	⑤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매출액이 노무비의 50% 이상)	
	⑥ 정관·규약 등을 갖출 것	⑥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에 맞는 정관·규약 등을 갖출 것
	⑦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상법상 회사 등의 경우)	⑦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상법상 회사 등의 경우)
신청	상시 접수	연중 일정 공고

조직형태

-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추어야 함
- 사회적기업 인증가능 조직형태 예시



*개인 사업자는 인증 불가

유급근로자 고용

-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해야 함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고일이 속하는 달에 영업활동을 수행해야 함 ※ 단, 사회적 목적 실현 유형 중 일자리제공형은 전월 말 기준 1명 이상의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고 전체 근로자 중 취약 계층 비율이 30% 이상일 것 신청일 직전 6개월(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 평균 3명 이상 고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 전월 말 기준 1명 이상의 유급 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해야 함 ※ 단, 사회적 목적 실현 유형 중 일자리제공형은 신청일 직전 6개월(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 평균 3명 이상 고용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를 유급근로자로 인정, 유급근로자를 고용함에 있어 고용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해야 함

*단, 일자리창출사업 등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고 매출이 발생하여야 함

사회적 목적의 실현

- (예비)사회적기업은 사회적 목적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여야 함
-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유형 중 하나에 부합해야 함

사회서비스 제공형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30% 이상일 것
일자리 제공형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30% 이상일 것
지역사회 공헌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인 경우 -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경우: 전체 근로자 중 해당 조직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20% 이상 -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에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지역 취약계층 비율이 20% 이상 - 지역의 빈곤·소외·범죄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경우: 해당 부분의 수입 또는 자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자출의 40% 이상 -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조직에 대하여 컨설팅·마케팅·자금 등을 지원하는 경우 : 해당 부분의 수입 또는 자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자출의 40% 이상
혼합형	전체 근로자 및 전체 사회서비스 수혜자 중 취약계층 비율이 각각 20% 이상일 것
기타 (창의·혁신)형	요건에 따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광역자치단체장이 결정

취약계층이란

- 저소득자 ■ 성매매피해자 ■ 북한이탈주민 ■ 가정폭력 피해자 ■ 고령자 ■ 결혼이민자 ■ 경쟁보호 대상자
- 범죄구조피해자 ■ 장애인 ■ 1년 이상 장기실업자 ■ 노숙인 ■ 여성가장 ■ 한부모가족지원법 상 보호대상자
- 기타(난민, 약물·알콜·도박중독자 등) ■ 보호종료아동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2조)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 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

- 사회서비스 대상 취약계층은 위의 취약계층을 포함하여 조손가정, 외국근로자, 금융채무불이행자 및 저신용자, 학교폭력 피해자, 학교 밖 청소년, 중증질환자 등을 포함하여 단력적으로 인정

사회서비스란

- 교육 ■ 사회복지 ■ 청소년 상담서비스 ■ 가정지원 ■ 보육 ■ 환경 ■ 산림 보전 및 관리
- 고용서비스 등 사업지원서비스 ■ 보건 ■ 문화예술, 관광 및 운동서비스 ■ 간병 및 개인서비스 ■ 기타

정관의 필수사항

- 해당 기관의 정관이나 규약에 법정 기재사항(10가지)을 반드시 갖춰야 함
- 필수사항 : ①목적 ②사업내용 ③명칭 ④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⑤기관의 의사결정방식 ⑥수익배분 및 재투자 관련 사항 ⑦출자 및 응자에 관한 사항 ⑧종사자의 구성 및 임원에 관한 사항 ⑨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 ⑩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윤의 사회적 목적 사용

-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해야 함
- 정관 상 해당 규정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배분 가능한 이윤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사회공헌사업 등에 우선 사용되어야 함
- ※ 이윤의 배분이 가능한 방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 영농(어)조합법인, 농(어)업회사법인, 일반협동조합 등에 적용
- ※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우 이익금 처분 내용 확인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사회적기업)

-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를 갖추어야 함
- ※ 법령상 의견권이 있는 이사회를 주된 의사결정기구로 인정 (불가피한 경우,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 심의를 통해 다른 유형의 의사결정구조 인정 가능)
- 신청기업은 정관에 근거하여 인증 신청일의 직전 6개월 이내 최소 1회 이상 의사결정구조의 회의개최 실적이 있어야 함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사회적기업)

-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인증 신청일 직전 6개월 동안의 영업활동을 통한 총 수입이 같은 기간 자출된 총 노무비 대비 50% 이상이어야 함
- ※ 단, 영업활동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의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및 노무비를 기준으로 산정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노무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화 및 서비스 공급을 통해 얻은 수입(누매출액) ※ 단순 지원금, 보조금은 해당하지 않음 제조업과 유통업은 원재료비와 상품매출원가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포함 : 급여, 재수당, 상여금, 일용임금, 퇴직금(지급금) 제외 : 교육훈련비, 퇴직급여충당금, 사용자부담 사회보험료 등